

수정안 조문 대비표

제 정 안	수 정 안
부 칙	부 칙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	<u>제1조(시행일)</u> 이 조례는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.
<u><신 설></u>	<u>제2조(경과조치)</u> 이 조례 시행 이전 부터 설치 운영 중인 대구광역시 <u>달서구 기부심사위원회는 이 조</u> <u>례에 따라 설치한 것으로 본다.</u>